『통화금융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22.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3.11.15.



《朴 레》

١.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9
III .	자료수집	2	О
IV.	통계처리	및 분석2	4
٧.	통계공표,	,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2	7
VI.	통계기반	및 개선4	1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통화금융통계」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통화금융통계(승인번호 : 제301006호)
- 한국은행 /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1.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및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제26조(실지조사 등)
 - 통계 승인번호 : 제301006호(1976년 7월), 보고통계

[한국은행법]

-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 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
 -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통계법」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작성방법

○ 금융기관이 보고한 기초자료(금융기관 B/S 항목별 잔액, 주요 항목별 금리 등)를 오류검증 작업을 거쳐 집계 등을 통해 집계표, 개관표(금융기관간 상호거래분 제거) 등을 작성하여 공표 통계를 편제. 단,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통계는 조사대상기관의 금리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 등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3. 작성 및 공표주기

- 통화 및 유동성(월), 금융기관 여수신(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월),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월), 가계신용(분기), 산업별대출금(분기), 지역금융통계(월: 여수신통계, 분기: 산업별통계)
 - 통화금융통계는 작성주기와 공표주기가 일치

4. 통계작성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개 요

- 월별로 작성·공표되는 통화 및 유동성, 금융기관 여수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그리고 지역별 여수신통계는 조사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지역별여수신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자료의 검증작업을 거쳐 집계, 상호거래 제거 등의 통계작성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통계를 생산
 - 통화 및 유동성의 경우, 원계열 뿐만 아니라 계절조정계열(SA)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매년 3월경 계절조정계수를 새로이 산출하여 향후 1년간 계절조정계열 작성에 이용
-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월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조사표를 수집하여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가중치로 삼아 가중평균금리를 생산
- 분기별로 작성되는 가계신용, 산업별대출금통계는 분기별로 각각 가계신용조사표(예금취급기관 이외 금융기관 대상), 산업별대출금조사표를 입수하여 해당 통계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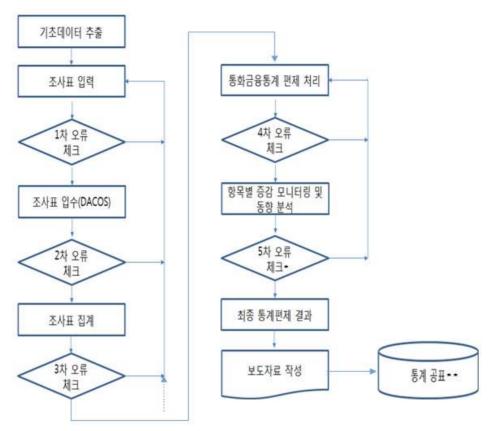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 편제 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통화 및 유동성	 협의통화(M1) 및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및 광의유동성(L)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가계 신용	■ 가계신용(분기)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월, 지역별 포함)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 예금은행 총수신, 종별·예금주별·기간별 예금 ■ 예금은행 총여신, 자금별 대출금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지역별 여수신	■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및 여신 ■ 생명보험회사 수신 및 여신
산업별 대출금	■ 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 및 시설자금 - 예금은행(지역별 포함)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리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수신 및 대출) ■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비중

□ 편제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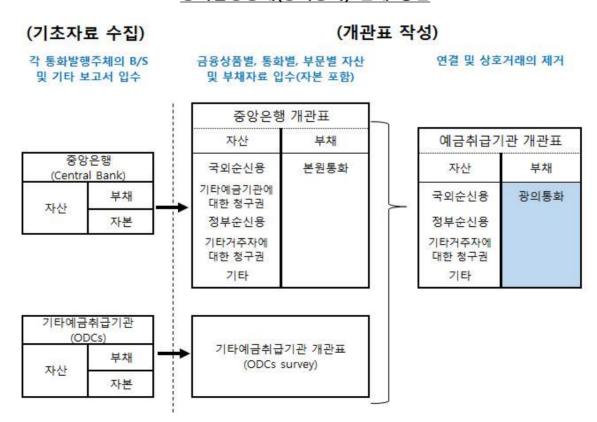
- 통화금융통계의 편제 작업은 월별로 조사되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를 근간으로 하여 월별통계인 통화 및 유동성, 금융기관 여수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지역금융통계가 작성되는데, 모든 통계는 통계간 정합성 검증과정을 거쳐 일관성 있게 관리, 작성·공표되고 있음. 한편, 분기별로 작성되는 가계신용통계, 산업별대출금통계 역시 월별 통계의 분기별 수치와 정합성 검증을 거쳐 작성·공표되고 있음*
 - * 통화금융통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가 대부분 금융기관 B/S 관련 기초자료 수집, 검증, 집계·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통계편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복적인 설명을 피하기 위해 통화금융통계의 중심이 되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대표로 하여 통계작성 절차를 기술하고자 함
- 통화 및 유동성 통계 편제
 - (기초자료 입수·검증) 중앙은행 관련 기초자료는 한국은행 내부 각 담당부서로부터 수집하여 경제통계시스템에 입수 처리하고, 중앙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경우는 통화금융통계 조사표를 통계 작성 대상월의 익월 20일까지 DACOS 시스템을 통해 입수하여 각 기관별 기초자료의 오류검증절차를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처리
 - (통계편제) 조사표 입수 완료 후 편제의 모든 단계를 경제통계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합산, 상호거래의 제거 등을 통해 광의통화(M2), 유동성(Lf, L) 등 통화금융통계를 산출
 - (공표 준비작업) 해당월 보도자료 및 주요 특이사항 등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내부 보고
 - (통계 공표) 인터넷 공표시기에 맞추어 홈페이지 및 경제통계시스템에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 등록

통화금융통계 편제 프로세스 흐름도



- * 한국은행의 확인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증감내역 조사 및 확인
- **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조사통계월보 등을 통해 공표

통화금융통계(광의통화) 편제 방법



□ 통계의 관리

- 통화금융통계는 기초자료, 편제자료, 이관자료(ECOS 공표자료)로 구분되며, 모두 ECOS 시스템에서 관리·보관되고 있음
 - 기초자료 : 금융기관을 통해 입수되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 등 모든 기초자료
 - ※ 기초자료 입수에 이용되는 DACOS 시스템(https://dacos.bok.or.kr)은 각 금융기관이 담당별로 ID를 부여받아 조사표를 등재하는 사이트로 신규로 금융기관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아 경제통계국 통계정보팀에 사용자ID를 요청
 - 편제자료 : 기초자료를 집계·가공한 모든 편제자료
 - 이관자료(ECOS 공표자료) : 편제자료 중 ECOS 공표 대상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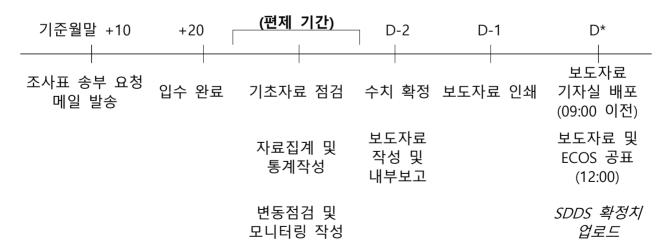
□ 이용자 서비스

○ 매달(또는 매분기) 사전공표일정에 맞추어 해당 통계를 보도자료 공표 및 ECOS 시스템 공시(일부 통계는 보도자료 배포 없이 ECOS에 공시)

□ 조사 일정 및 일정별 수행 업무

- 조사 실시 : 매월 20일까지 통화금융통계조사표 회수
- 기초자료 오류 점검 : 자료의 이상치, 오류 등 점검(기초자료 입수 후 ~ 1주일 정도)
- 자료 집계 및 통계편제 : 자료집계 · 통계편제작업 수행 및 변동 점검 등 모니터링(~통계공표 2일전)
- 보도자료 작성, 내부보고 및 공표 : 매월 10일 전후
 - ※ 계절조정지수의 산출 : 전년도 말까지 연장된 시계열을 기준으로 매년 1월 통계 작성시 계절조정을 새로 실시

통화금융통계(통화 및 유동성) 편제 일정



* 동 공표일정은 매년 말 정하여 "ECOS > 통계공표일정"에 발표하고 있음

5. 통계작성 문서화

5-1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 □ IMF 통화금융통계 작성 매뉴얼 및 편제가이드
 - O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통화금융통계 매뉴얼, 2000)
 - O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Compilation Guide(통화금융통계 편제가이드, 2008)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통화금융통계 매뉴얼 및 편제가이드(2018)

(https://www.imf.org/en/~/media/87F002A9CC784DF786797A6526A98D54.ashx)

6. 통계연혁

6-1 통화금융통계의 최초개발 시기

- 우리나라 최초의 통화통계 편제는 1920년에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의 통화통계 체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단순히 합산하는 수준에 그침
- 1957년 4월 최초의 통화신용정책 규제지표로 M1을 채택
 - 조사월보(1958년 9월호)에 1956년까지의 시계열을 최초 발표(통계시계열 조정상의 문제 등으로 IMF의 편제기준을 일부분만 도입)
- 1974년 2월에는 그간의 경제규모 확대 등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통화금융통계의 국제표준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IMF의 편제기준에 맞게 개편
- 1981년 3월부터 총통화(구M2)를 비롯한 각종 통화지표의 평잔 통계 편제

6-2 통화금융통계의 개발 배경

- 1950년에「한국은행법」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던 부름필드 박사가 당시 한국의 통화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화량(Money Supply)이란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통화통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조성
- 통화신용정책의 규제지표로 통화통계를 이용하기 위해 IMF는 1955년 통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통계 편제방법을 개발하고, 통일적인 편제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 1957년 4월 최초의 통화신용정책 규제지표로 M1을 채택하고, 조사월보(1958년 9월호)에 1956년까지의 시계열을 최초 발표(통계시계열 조정상의 문제 등으로 IMF의 편제기준을 일부분만 도입)
- 2002년 3월 한국은행은 IMF의「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새로운 통화지표로서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후 2006년부터 유동성지표(Lf, L)를 작성·공표

6-3 통화금융통계의 변경 또는 개편이력 관리

□ 통화금융통계 개편 이력

통화금융통계 주요 편제 이력

연월	주요 내용		
1951. 3	통화량을 '통화공급량 제1의(현금통화+당좌예금)'와 '통화공급량 제2의(현금통화 +일체의 예금)'로 규정하여 최초 편제 발표		
1957. 4	최초 통화신용정책의 규제지표로 통화(M1)를 채택		
1969. 7	본원통화 공식 편제 및 발표		
1970. 1	평잔 기준의 통화지표(국내신용, 통화, 총통화) 편제		
1970. 4	국내신용 공식 발표		
1979. 3	총통화(구M2) 공식 편제 발표		
1982.10	M3를 1982.9월분부터 작성, 공식 발표		
1984. 7	M3지표의 포괄범위 확충. 총유동성개관표를 금융개관표로 개칭하고 현행체제로 개편하여 월별로 편제		
1986. 3	평잔 M3 편제		
2002. 3	「통화금융통계매뉴얼(2000)」에 따라 새로운 통화지표(M2, 광의통화)를 편제		
2006. 6	광의유동성지표(L) 신규 편제. M3의 명칭을 금융기관유동성(Lf)으로 변경		
2009. 9	증권사 CMA계정의 광의통화(M2) 편입		
2012. 3	통화 및 유동성 증가율 주지표를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에서 계절조정계열 전월비 증가율로 전환		
2013. 11	2013.9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시부터 경제주체별 통화(M2) 발표		

7. 통계의 작성목적

7-1 통계작성 목적

- 통화금융통계는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화정책의 수립 및 금융안정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과거 통화량을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가 실시되면서 통화량은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가계신용통계가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리통계도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7-2 주된 활용분야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정책의 기초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정책당국의 경제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대학, 연구기관 등 경제분석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한 기초자료
-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경제지표로 다양하게 활용

7-3 국내·외 관련 통계 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 통화 및 유동성 통계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금융시장동향(내부보고 자료) 금융기관 여수신 및 통화(M2) 속보치
- 가계신용통계 등
 - 금융위·금감원 속보치: 가계대출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통계청 승인 없이 한시적으로 작성·공표되는 통계자료로 2017년 4월부터 작성

8. 주요 이용자 및 용도

8-1 주요 이용자 관리

- 통화금융통계는 작성 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매월(매분기) 공표되고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후 기자설명회(가계신용), 백브리핑(가중평균금리, 산업별대출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 이용자들의 문의에도 수시로 응대하고 있음
- 경제통계시스템(ECOS) > 고객지원 > Q&A를 통해 통화금융통계 관련 문의 응대
- 일반 민원의 경우 전자민원시스템 및 유선을 통해 응대하고 대국민 의견을 상시 수렴
- 매년 경제강좌(한은금요강좌)를 통해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통화금융통계 관련 현황, 이론 및 특징을 교육하여 통계 수요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
- 한국은행 내 조사 및 정책부서로부터 발생하는 통계이용 관련 질의사항에 수시로 응대하고 의견을 교환

8-2 주요 이용자 유형별 용도

-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책당국의 경제현황 판단 및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
- 대학, 연구기관: 경제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금융기관, 기업, 개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9. 이용자 의견수렴

9-1 이용자 의견수렴 실시 내용과 주요 결과

○ 통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의 이용 목적, 이용 경로, 이용 횟수, 각 통계별 만족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

II. 통계설계

1. 보고양식 개념 및 정의

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 주요 용어(통화 및 유동성 지표)
 - 한 나라의 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 총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화 총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통화지표임
 - '무엇이 통화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금융상품의 결제기능, 가치저장기능, 유동성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각 나라는 자국의 금융제도에 따라 다양한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편제
 - 통화지표는 ① 통화총량지표의 구성요소인 금융상품, ② 통화보유주체(money holders), 그리고 ③ 통화발행주체(money issuers) 등 세 가지 요소로 결정
 - ① 우선 금융상품의 경우, 유형별로 유동성(liquidity)과 가치저장의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을 배열하고 통화성(moneyness) 정도를 평가
 - 유동성은 금융상품이 완전한 시장가치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교환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가리키며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현금통화이고 그 다음이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결제성 예금임. 이들은 통화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협의의 통화(M1)로 불림
 - ② 통화보유주체는 통상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단위가 포함
 - 1) 공공 및 기타 비금융기업, 2)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단위, 3) 가계, 4)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해당(중앙정부와 비거주자는 통화보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광의통화에서 제외)
 - ③ '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가지는 모든 금융기관을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하며, 이 예금취급기관이 통화발행주체가 됨
 - '광의통화'의 발행주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취급기관으로 구성
 -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의 고유계정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구성되고, 기타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계정),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계정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각 지표마다 아래 표와 같은 포괄범위를 가지며, 편제된 지표는 모두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구분	지표명	구성내역
	M1 (협의통화)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통화 지표	M2 (광의통화)	= M1 + 정기예적금 및 부금(원화예수금)* + 시장형 금융상품(CD, RP, 표지어음)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MMF, CMA, 수익증권, 금전신탁) + 금융채* + 기타*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외화예수금, 신탁형증권저축(2006.6월 이후 잔액 없음)) * 만기 2년미만 금융상품에 한함
	Lf (금융기관 유동성)	= M2 + 만기 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 증권금융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포함) 보험계약준비금 등
유동성 지표	L (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 보험계약 준비금, 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 발행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 항목별 정의(통화 및 유동성)

- 협의통화(M1) =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현금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에서 예금취급기관 시재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개념상 중앙정부 및 비거주자가 보유한 현금은 제거하여야 하나 금액 비중이 작고 추적이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전체 현금통화 해당액을 전액 합산
 - 결제성예금은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 요구불예금1)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2)을 합산하여 산출(단, 예금취급기관, 중앙정부 및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
 - 1)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 (은행) 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 + 보통예금 + 별단예금 + 공금예금 + 비거주자원화예금 + 비거주자자유원예금 + 국고예금 + 기타요구불예금
 - (비은행) 당좌예금 + 보통예금 + 별단예금 + 공공예탁금 + 별단예탁금 + 보통예탁금 + 국고예금 (*) 발행기관 : 중앙은행,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 2)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저축성예금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은행)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비거주자원화예금 + 비거주자자유원예금 (비은행) 자립예탁금 + 자유저축예탁금 +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 비거주자 원화예수금
 - (*) 발행기관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 (**) 통화 개념상 비거주자 및 정부 보유분이 제외되므로 비거주자 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은 실무상 불포함
- 광의통화(M2) = M1 + 2년미만 정기예적금1) + 시장형상품(=CD2) + RP3) + 표지어음4))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2년미만 금전신탁5) + 수익증권6) + MMF7) + CMA8)) + 2년미만 금융채9) +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2년미만 외화예수금10) +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11) + 신탁형 증권저축12))
 - *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만 포함(예금취급기관, 중앙정부, 비거주자 보유분 제외)

- 1) 2년미만 정기예적금:
 - (은행) 정기예금 + 정기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 + 기타저축성예금 + 수입부금 + 주택부금 중 만기2년미만 예수금
 - (비은행)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장학적금, 학생적금, 수입계금, 수입부금,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기타예수금 중 만기2년미만 예수금
 - (*) 발행기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 2) CD(양도성예금증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 발행기관 : 예금은행
- 3) RP(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성격을 띄며 금융기관중 예금취급기관이 매도한 RP만을 포함[기타금융기관인 증권회사 RP는 M2에는 포함되지 않고 L에 포함. 다만 RP형 CMA는 M2에 포함]
 - (*) 발행기관 : 예금은행,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 4) 표지어음[(표지)어음매출] : 매출어음이라고도 하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입어음을 근거로 발행한 표지어음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
 - (*) 발행기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 5) 2년미만 금전신탁: 신탁회사가 "금전"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상품으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신탁한 상품과는 구별되며 그 중에서 계약만기가 2년미만인 것. 다만, MMT(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계약만기와 상관없이 2년미만으로 취급하고 퇴직연금신탁은 계약만기와 상관없이 2년이상으로 취급(하도록 기관에 지도)
 - (*) 발행기관 : 신탁회사
- 6)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제 189조 등 참조) 중 MMF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으로 장·단기 채권형, 주식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기타로 나뉘며 기타의 경우 추가형과 단위형 중 추가형만 포함
 - (*) 발행기관 : 투자신탁
- 7) MM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제 189조 등 참조) 중 투자자들의 일시 여유자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운용하는 개방형 투자신탁상품
 - 과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취급되어 M1에 속했으나 익일환매제도 도입(2005.11.21.)에 따라 법인 MMF가, 미래가격제도(2007.3.22.)에 따라 개인 MMF가 M1에서 제외
 - (*) 발행기관 : 투자신탁
- 8) CMA: 종금사 CMA와 증권사 CMA로 나뉘며 증권사 CMA는 또 다시 예금형, MMF형, RP형으로 구분. 종금사 CMA는 투자금융상품에 운용(수익증권, 발행어음, CD, CP 등)되나 예금으로 분류되어 기존부터 M2 상품의 하나로 취급되었으나, 증권사 CMA는 실제로는 증권금융 예수금(예금형), MMF(MMF형), 채권(RP형) 등의 상품을 매수한 것으로 '09. 7. 3.부터 순차적으로 증권회사계좌에서 직접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이 M2 상품으로 편입
 - (*) 발행기관: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CMA계정
- 9) 2년미만 금융채 :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 사채[금융채] 중 발행만기가 2년미만인 것
 - (*) 발행기관: 한국은행,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수출입은행

- 10) 2년미만 외화예수금 : 외화당좌예금 + 외화보통예금 + 외화통지예금 + 외화정기예금 + 외화별단예금 + 기타외화예수금 중 약정만기 2년미만 상품. 이 때 당좌나 보통, 별단의 경우 전액 2년미만으로 취급
 - (*) 발행기관 : 예금은행 등
- 11) 종합금융사 발행어음[자발어음] : 종금사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금융상품
 - (*) 발행기관 : 종합금융회사
- 12) 신탁형 증권저축(: 과거 대형 투자신탁회사[자산운용사, 현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신탁재산 환매 등에 대비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된 "확정이자부" 상품으로 현재는 사라진 상품
 - (*) 발행기관 : 자산운용사[구 투신운용사] → 2016.12월분부터 입수 중단
- 금융기관유동성(Lf) = M2 + 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
- 광의유동성(L) = Lf +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 (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통화 및 유동성 지표 포괄범위1)

(2022년 12월말(잠정), 원계열 기준)

(단위: 조원, 말잔)

현금통화 (162.9)	IVI I			
요구불예금 (374.8)	(협의통화)			
수시입출식예금 (699.3)	(1,237.0)	M2 (광의통화)		
2년미만 정기예적금 (1,594.6)			Lf	
시장형 금융상품 ²⁾ (33.4)		(3,739.3)	(금융기관 유동성)	L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³⁾ (589.3)			(5,106.3)	(광의유동성)
기타 예금 및 금융채 (285.0)			(=, ===,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등 (536.2)				(6,555.2)
생명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예수금 (830.8)				
기타금융기관상품 (586.8)				
국채, 지방채 (527.1)				
회사채, CP (335.1)				

-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 2) CD, RP, 매출어음
 - 3) 만기 2년미만 금전신탁, 수익증권, MMF, CMA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L(광의유동성)에 포함되는 주요 상품 설명

구분	과목1	과목2	설명
	보험회사	손보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저축성 기능이 높은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를 파악하여 반영
	보험계약 보험계약 적립금	- 손해보험 특별계정 적립금 - 생명보험 특별계정 적립금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 특별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를 파악하여 반영
금융 부문	증권회사 RPI	매도	투자매매업자 등의 RP 매도 잔액에서 이미 M2에 반영되어 있는 RP형 CMA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 Lf 대상 금융기관 보유분은 통화금융통계조사표에서 입수
	예금보험공사치	네 및 자산관리공사채	총 발행잔액 중 금융기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보유분 반영
	기타 금융기관 발행채권	카드채 (할부금융채 포함) 리스산업채	여신전문기관 발행채권,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리스산업채, 신기술사업금융채를 편제대상으로 함
	ABS 사채	기타	
	אסט אין און	국고채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국민주택채권	일정행위(개발 등) 시 매입이 의무화되는 국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임
	+u	재정증권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국채	공공용지보상채권	정부가 도로나 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용지보상비 대신 교부
		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등을 위해 발행
정부		기타	국채의 Lf 편제대상기관 보유분은 통화금융통계표에서 입수
및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민간	지방채	도시철도공채	각 지방마다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부문		기타	
	기업어음 (ABCP포함)	CP할인액 (증권사, 종금사)	CP 매출, 중개기관(증권사, 종금사)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반영. CP의 Lf 편제대상기관 보유분은 통화금융통계표에서 입수
		발행액	기반영된 금융채와 특수채를 제외한 일반회사채(공모발행분만)
	회사채	외화채권	Korean Paper투자기관들 중 Lf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들의 보유분(손보사 및 기타금융기관 보유분)
		외화금융채	외화표시 금융채
기타	주식, 뮤추얼판	선드 및 파생상품 등	시장가격의 잠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광의유동성 지표에서 제외

1-2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우리나라 통화금융통계는 IMF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음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2000(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2000))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Compilation Guide(IMF 통화금융통계 편제가이드(2008))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2018(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및 편제가이드(2018))

1-3 주요 항목의 작성목적

- 협의통화(M1) :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함
- 광의통화(M2) : 기간물 정기예적금 및 부금 등 단기 저축성예금 뿐만 아니라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파악하는 데 적합함
-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통화(M2) 편제대상 외에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정기예적금, 금융채 등), 증권금융회사의 증권금융예수금,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이 포함되며 광의유동성(L)보다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협의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광의유동성(L) : 가장 넓은 범위의 유동성 측정 지표로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2. 보고양식 적용 분류체계

2-1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

□ 금융상품별 분류

○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통화 및 유동성 금융상품을 유동성 정도에 따라 통화와 유동성으로 구분(예: 만기 2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경우 통화에 포함)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구성 금융상품1)

	통화	지표	유동성	지표
	M1 (협의통화)	M2 (광의통화)	Lf (금융기관유동성)	L (광의유동성)
현금통화	•	•	•	•
요구불예금	•	•	•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	•	•
MMF		•	•	•
2년미만 정기예적금		•	•	•
수익증권		•		•
시장형상품 ²⁾		•	•	•
2년미만 금융채		•	•	•
2년미만 금전신탁		•	•	•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3)		•	•	•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	•
생명보험계약 준비금 등 ⁴⁾			•	•
기타금융기관 상품5				•
국채, 지방채				•
회사채, CP ⁶⁾				•

주: 1) ECOS(http://ecos.bok.or.kr)상 기재 순서 기준

- 2) CD, RP, 표지어음
- 3) CMA, 2년미만 외화예수금,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 4) 증권금융 예수금 포함
- 5) 손해보험회사 장기저축성보험계약 준비금, 증권사 RP, 예금보험공사채, 여신전문기관 발행채 등
- 6) 전자단기사채 포함

□ 보고 금융기관 분류

				통계	구분	
잍	1권 구분	기관명	통화 및 유동성 ¹⁾	금리	가계신용	산업별 대출금
금융기관	중앙은행	통화당국	•			
		외국환평형기금	•			
	예금은행	시중은행	•	•	•	•
		지방은행	•	•	•	•
		외은국내지점	•		•	•
		특수은행	•	•	•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수출입은행	•			•
	에러지비기진	종합금융사	•	•		•
		투신운용사	•			
		수익증권 ²⁾	•			
		증권금융	•			
		신탁계정	•		•	•
		상호저축은행	•	•	•	•
		신용협동조합	•	•	•	•
		상호금융	•	•	•	•
		우체국예금	•		•	•
		새마을금고	•	•	•	•
		증권사CMA계정	•			
보험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	•		•	
		우체국보험	•		•	
		증권금융	•			
	기타	여신전문기관			•	
		공적금융기관			•	

주: 1) 금융기관 여수신 및 지역별 여수신 포함 2) 증권투자신탁 포함

통화금융통계 편제대상 보고기관 현황1)

(2022년 12월말 기준)

(개)

						(* 11)
		통화	유동성	금리	가계신용	산업별대출금
예금은행		54		19	54	54
	시중은행	9		9	9	9
	지방은행	6		6	6	6
	외은지점	35			35	35
	특수은행	4		4	4	4
개발기관		1				1
종합금융화	회사	3		3		3
신탁계정		44			44	44
상호저축은	은행 ²⁾	1		1	1	1
새마을금_		1		1	1	1
신용협동2		1		1	1	1
상호금융 ²)	3		1	3	3
	농협	1		1	1	1
	수협	1			1	1
	산림조합	1			1	1
우체국예급		1			1	1
증권사 CI	MA계정	22				
생명보험			23		23	
우체국보험			1		1	
증권금융			1			
여신전문기관					49	
공적금융기관					3	
기타 ³⁾					21	
	계	131	25	26	202	109

주 : 1) MMF 및 수익증권 발행기관(금융투자협회 자료 활용)은 제외

- 2) 각 기관별 중앙회가 통합 제출
- 3) 손해보험, 보훈기금, 군인복지기금, 한국장학재단

2-2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표준분류체계 사용 여부 또는 미사용 사유

□ 적용 분류체계는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보고양식 구성

3-1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 □ 보고양식의 확정
 - 보고양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설계한 양식을 사용
 - 통화금융통계 조사표 수정 시에는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한 후 통계청에 승인을 신청하며, 승인받은 조사표를 이용하여 통계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 작성을 요청하고 있음

□ 보고양식의 종류

- 통화금융통계조사표(매월)
 - 수익증권판매액조사표(수익증권판매사)
 - 지역별여수신보고서(예금은행)
 - ※ 비은행금융기관은 통화금융통계조사표에 지역별여수신보고서가 통합되어 있음
- 금리조사표(해당기관, 매월)
- 가계신용통계조사표(해당기관, 매분기)
- 산업별대출금보고서(해당기관, 매분기)

3-2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 □ 보고양식 변경 내용 안내
 - 보고양식이 변경되는 경우 각 기관 앞으로 수정 내용 관련 공문을 발송
 - 수정 조사표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업로드
 - 기초데이터 입수와 관련하여 작성기관 등과의 업무협의를 수시로 실시

3-3 보고양식

□ 보고양식의 예시(통화금융통계조사표 일부 발췌)

	통화금융통계조사표				
기 관 명:	0	기관코드	0		
작성자명:	0	연 락 처	0		
	: 산식임(입력 불가 영역)			No.	
	: 입력 가능 영역		: 평잔입력 불필		
9000 900	V 10 100 22 100			(단위:백만원)	***********
코드	계정과목명	전월말잔	당월말잔	평잔	에러 또
CZ00000	[A] 자산홍계		0		
CZ01000	[[현금 및 예치금]]		0		
BM00000	1. 현금		0	9	
BM10000	1-1, 통화				
BM1000A	(공동 CD/ATM 투입자금)				
BM20000	1-2. 타점권			0	
BM2000A	(당좌대출상환타점권)			1	
BM21000	1-2-1, 국고수표				
BM29000	1-2-2, 기타				
BP10000	2. 외국통화				
AV00000	3. 원화예치금		0	0	
AV10000	3-1. 한국은행		0	0	
AV10100	1, 지준예치금				
AV10200	2. 통하안정계정				
AV10300	3. 자금조정예금				
AV19900	4. 기타				
AV20000	3-2. 은행에급취급기관		.0	0	
AV21000	3-2-1, 은행(산업은행제외)		0	0	
AV20100	1) 예금				
AV20200	2) CD매입	nenene		enenened and the second se	
AV2020A	(유통CD)				Pottotto
AV20300	3) 표지머음				
AV22000	3-2-2, 산업은행		0	-0	tanananan anananananana
AV30110	1) 요구불예금				
AV30120	2) 저축성예금				

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4-1 보고양식 설계, 변경 절차나 방법

□ 보고양식 변경 방법

- 양식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금융통계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 보고서 작성
 - 신규 통화성금융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통화성 검토 실시
-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보고양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앞 통계작성 변경 승인 신청
- 통계정보팀앞 조사표 양식 및 시스템 변경 의뢰
- 통계청의 승인 통보서 수령 후 변경된 양식으로 조사 실시

4-2 보고양식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 내용 및 숭인 일자

-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변경(승인일자 2010.4.7일)
 - 통계수요가 적은 일부 조사항목 폐지 등
- 산업별대출금조사표 변경(승인일자 2018.1.19일)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관련 조사표 항목 추가
- 산업별대출금조사표 변경(승인일자 2019.9.11일)
 - 기업형태별 구분항목에서 비법인기업내 '개인사업자' 대출 추가
- 지역금융통계 조사항목 추가(승인일자 2019.11.12일)
 - 지역별 원화대출 연체대출금 항목 추가
- 가계신용조사표 변경(승인일자 2021.9.14일)
 - 주택관련대출 세분화

5. 보고 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변동

5-1 보고대상 정의

○ 통화금융통계조사표의 보고대상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항목 금액(평잔 및 말잔)이며, 주요 자산항목(대출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액 등) 및 부채항목(예수금, 차입금, 채권발행액 등)의 경우 상호거래의 제거, 경제주체별 통화보유량 산출 등을 위해 주체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보고받고 있음

5-2 통계작성대상 정의

□ 통화통계 작성대상

○ 통계작성대상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을 중심으로 주체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작성하고 통화금융통계조사표의 자산항목과 각 통계별 추가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계신용, 산업별대출금 등의 통계를 작성함

□ 구체적 작성대상 및 정의

- 협의통화(M1) =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광의통화(M2) = M1 + 2년미만 정기예적금1) + 시장형상품(=CD2) + RP3) + 표지어음4))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2년미만 금전신탁5) + 수익증권6) + MMF7) + CMA8)) + 2년미만 금융채9) +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2년미만 외화예수금10) +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11) + 신탁형 증권저축12))
- 금융기관유동성(Lf) = M2 + 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
- 광의유동성(L) = Lf +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5-3 보고대상과 통계작성대상 간 차이

- 보고대상이 통계작성대상보다 범위가 더 넓음
 - 통화금융통계의 보고대상중 일부 항목은 각 금융기관재무제표의 연결시 상호거래의 제거, 오류체크 등을 위하여 이용되기 때문임

5-4 통계작성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 보완 방법

-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추가) 해당 금융상품 등의 통화성을 검토하여 통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대상에 포함. 해당월 평잔(적수를 해당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과 말잔(전액 반영)에 반영 (통계정보팀앞 조사표 양식 및 시스템 변경 요청)
 - (삭제) 규정 변경,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금융상품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제거시점까지 평잔과 말잔에 반영하고 이후 잔액이 0이 되므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없음(이전 기간의 시계열 유지 등을 위해 조사표나 시스템 변경은 하지 않음)
- 소급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상품 규모의 중요성 관점에서 소급 반영할 기간을 선정하여 통계를 수정하고 수정사실을 보도자료 등에 표시(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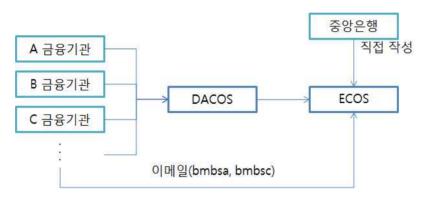
Ⅲ.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1-1 자료수집체계 및 방법

- 보고기관(금융기관) 담당자는 한국은행의 DACOS 시스템에 통화금융통계 조사표를 작성하여 업로드
- 한국은행 통화통계 담당자는 한국은행계정을 조사표 형태로 작성하여 ECOS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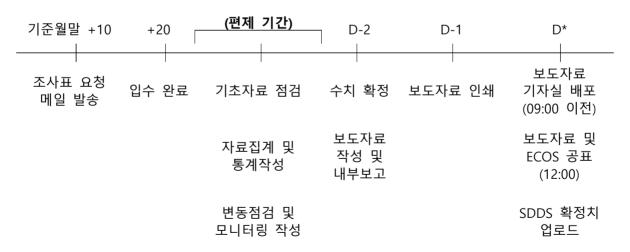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DACOS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입력 시 오류 발생 등)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금융통계 담당자가 해당 조사표를 ECOS에 직접 업로드

1-2 통계작성절차 흐름도

통화금융통계(통화 및 유동성) 편제 일정



* 동 공표일정은 매년 말 정하여 "ECOS > 통계공표일정"에 발표하고 있음

1-3 자료수집 단계별(기관별) 전산입력, 오류점검, 자료집계 등 과정

□ 최초 등록단계에서의 자료 입력

- 중앙은행 계정: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행내 각 부서의 담당자들로부터 받은 후 종합하여 중앙은행 조사표를 작성
- 통계 담당자가 해당 조사표를 ECOS에 직접 업로드하며 통계 편제단계에서 오류를 점검
- 각 보고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통계자료 입수 시스템(DACOS)을 이용하여 입력

□ 조사표 입력 단계의 오류 점검

- 금융기관 보고담당자
 - 금융기관 보고담당자가 조사표(엑셀)를 작성하면 조사표 내에 설정된 항목별 합계 등 산식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오류가 점검됨
 - 점검 완료된 보고서를 금융기관 보고담당자가 DACOS에 입력

□ 통계편제(ECOS편제) 단계의 오류 점검

○ DACOS를 거쳐 경제통계시스템(ECOS)으로 집중된 자료를 통계편제단계에서 내검 프로세스에 따라 오류를 점검(개별기관별, 금융기관 그룹별)하고 한국은행(금융통계팀) 통계작성 담당자가 각 담당 부문별로 정합성을 체크하여 이상치 등을 확인

1-4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주요 원인 파악 및 대책 방안

○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애로사항 등을 청취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2-1 보고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 관련 사항

- □ 보고담당자에 대한 교육
 -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표 관련 변경사항 등 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의 업무협의(보고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2-2 보고담당자 대상 교육내용

- □ 보고기관 담당자에 대해 조사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표 작성 편람 제공
 - 일반적 안내사항
 - 조사 목적, 법적 근거, 편제 및 활용 방법, 조사표 회신 정보 등 안내
 - 항목별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계정과목명 :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범위를 명시
 - 유의사항 : 타 기관 보고서와의 분류체계 차이 및 계정과목간 정합성 등을 설명
 - 주체별 분류 : 경제주체별 분류 기준 설명

2-3 교육교재

○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보고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작성편람을 제공

2-4 의문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 팀내 상시 조사원(5명 내외)을 운용하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고담당자의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 등 해결
 - 매뉴얼 이외 기타처리사항이나 조사원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가 직접 해결

2-5 보고양식 및 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교육 실시 관련 사항

○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표 관련 변경사항 등 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의 업무협의(보고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등 실시

업무명	교육훈련 교재	강사	방법	교육내용
통화금융	조사원 매뉴얼	담당 직원	실습	 통화금융통계조사표 개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자료 입수 절차 전화 응대 요령 교육 자료 내검 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책자 및 보도자료 배포 방법 교육

3. 자료수집 기한 및 양식 관리

3-1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대한 조치절차 및 방안

- 금융기관 재무정보나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등 간접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 추정값을 이용하여 당월에 잠정치 편제 후 향후 기초자료 수집 완료 시 확정치로 변경
 - 기초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잠정 숫자가 외부로 공표될 시 잠정수치임을 명시(위첨자 'p' 표시)

3-2 기입요령 및 기입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주요 항목별 기입 요령 및 유의사항이 기재된 조사표 작성 편람을 제공하고 있음

3-3 작성양식 견본

○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양식



3-4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 주요 질의 응답 및 오류사례는 발생시 각 담당자 매뉴얼 해당항목 설명내용, 참고표시 등으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조사표 작성편람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지

3-5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에 대한 처리지침

○ 보고양식 미기재, 부실기재되어 있는 경우 조사대상기관에 조사표를 보완하여 수정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시 금융기관 재무정보나 금융감독원앞 제출 업무보고서 등 간접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음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1-1 자료코드 체계 및 코딩(부호화) 방법
- □ 금융기관 및 계정과목 코드 체계
- 금융기관 코드(일부 발췌)

And the latest terminal termin	은행에곱취급기	ð
(世名)仮位	기관코드	기관명
통화당적	1000	
시중은탶	2102	***************************************
시중은현	2100	
시중은행	2106	
시중은탶	2107	
시중은행	2111	
시중은평	2115	
시중은댐	2117	
시중유학	2118	
지방문량	2201	***************************************
지방은행	2202	
지방은빨	2204	
지방은행	2205	
지방은행	2207	
지밤은જ	2209	

○ 계정과목 코드(일부 발췌)

구분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내용	유의사항
공통	CZ0000J	(기타금융자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공통	CZ0000K	(비금융자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공통	CZ0000L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공통	CZ20000	(외화자산총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공통	CZ01000	I. 현금 및 예치금		
공통	MT09011	(현재가치할인차금)(-)	(평가계정). 계약금액의 현재가치와 명목상의 가액과의 차액 을 처리하는 계정.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 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종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공통	MT09021	(현재가치할증차금)(+)	(평가제정). 계약금액의 현재가치와 명목상의 가액과의 차역 을 처리하는 계정.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 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중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역	

2. 자료입력

2-1 보고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보고자료는 조사표(엑셀) 내 오류체크 산식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담당자가 항목별 합계 등 자체 오류점검을 거쳐 DACOS에 입력

2-2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한 방법

○ DACOS를 거쳐 경제통계시스템(ECOS)으로 집중된 자료를 통계편제단계에서 내검 프로세스에 따라 오류를 점검(개별기관별, 금융기관 그룹별)하고 한국은행(금융통계팀) 통계작성 담당자가 각 담당 부문별로 정합성을 체크하여 이상치 등을 확인

2-3 입력매뉴얼(지침서)

○ 조사표 작성 편람을 각 기관에 제공

2-4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이 필요한 조사표 작성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3. 자료내검

3-1 자료의 중복, 누락 등의 확인 및 보완 방법

- 각 기관별, 항목별로 다른 코드를 부여
- 조사원별로 담당 기관을 할당하여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조사역 및 과장에게 보고토록 함

3-2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통화금융통계의 경우 총 2단계의 내검 절차를 거침

(1단계: 기본적인 상하위 합산 오류 체크)

- 입력결과 내검
 - 조사표 입수 과정에서 기초적인 전산 내검 절차를 거침(누락 정보 유무, 코드 매치 유무, 조사 내용의 정합성 여부)
 - 전산 내검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 누락 정보가 존재할 경우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정보수정, 코드 매치가 누락되었을 경우 코드를 입력, 재무정보 등의 간접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 전산 내검 중 논리 내검은 상위계정이 하위계정 잔액의 합과 일치하는지, 평잔이 말잔의 변동폭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지 등을 점검

(2단계: 부문 담당 직원의 정합성 체크)

- 정합성 내검
 - 부문 담당자 선에서 가공된 자료에 대한 2차 내검 절차 수행
 - 금융상품 및 경제주체의 오분류, 자산과 부채간 대차 정합성, 급변 계정에 대한 사실확인 및 스무딩 여부 등을 점검
- 기타 자료 내검
 - 금융시장 동향, 주요 예금취급기관의 여수신 현황, 기타 기업의 재무보고서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한 결과와 수집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점검

-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일 경우 조사대상 업체 및 기관, 통계생산기관 등에 문의하여 오류 여부 확인 또는 수정

3-3 이상치를 처리하는 경우 이상치의 기준, 식별 및 처리방법, 처리결과 등 기록 · 관리

□ 이상치의 기준

- 해당월 조사표의 전월과 전월 회수한 조사표의 당월 금액 불일치
- 각 항목별 합계 검증
- 추세에 어긋나는 급격한 변동 등

□ 이상치의 식별 및 처리방법

- 금융기관 조사표의 전월과 당월 금액을 비교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해당월의 전월과 전월 회수한 조사표의 당월 금액의 일치 여부, 각 항목별 합계검증, 전월대비 급격한 변동 여부 등을 확인
- 금융기관의 B/S 조사표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금융통계의 특성상 담당자 재량으로 이상치 처리를 하지는 않으며 이상치 발생 시 자료의 정확성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조사표의 재작성을 요구

□ 처리결과

○ 조사표 원자료가 통계 작성 전 수정되므로 별도의 처리는 없음

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1-1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

□ 통화 및 유동성(보도자료 발췌)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 (계절조정계열 기준)

(평잔, 조원)

	2021 2022p			22		
	연간	 연간	 9월	10월	11월	12월 ^p
M1(협의통화)	1,281.6	1,333.0	1,319.5	1,294.7	1,260.3	1,231.4
MI(합니증되)	(21.0)	(4.0)	(-1.7)	(-1.9)	(-2.7)	(-2.3)
M2(광의통화)	3,430.4	3,714.3	3,744.2	3,757.9	3,785.3	3,779.0
M((영의증회)	(11.7)	(8.3)	(0.0)	(0.4)	(0.7)	(-0.2)
Lf(금융기관유동성)	4,733.3	5,077.6	5,118.2	5,135.3	5,157.9	5,161.8
니(ㅁ쯍기단ㅠㅎㅎ)	(9.8)	(7.3)	(0.1)	(0.3)	(0.4)	(0.1)
L(광의유동성) ¹⁾	6,254.2	6,508.3	6,517.6	6,541.3	6,566.2	6,508.3
나(히 귀ㅠᅙ'ゔ) ´	(10.7)	(4.1)	(0.3)	(0.4)	(0.4)	(-0.9)

주 : 1) L(광의유동성)은 말잔 기준 금액 및 전기대비 증감률(%)

- 2) ()내는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
- 2022년 12월 M1(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2.3% 감소 [전년동월대비 9.0%]
-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대비 0.2% 감소 [전년동월대비 +4.5%]
- (금융상품별) 정기예적금(전월대비 +31.6조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17.3조원), 2년미만 금전신탁(-14.5조원) 등이 감소
- (경제주체별) 가계 및 비영리단체(+11.1조원), 기타부문(+3.4조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업(-18.9조원)이 감소
-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는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4.4%]
-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9% 감소 [전년동월말대비 +4.4%]

□ 통화 및 유동성의 ECOS내 수록 현황

통계표 명칭	ECOS 분류 항목명
	1.1.2.1.1 M1 상품별 구성내역
통화 및 유동성 지표(평잔, 계절조정계열)	1.1.3.1.1 M2 상품별 구성내역
중의 못 ㅠㅎㅎ 시표(ㅎ안, 게글꼬ㅎ게글)	1.1.3.2.1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1.1.4.1.1 Lf 상품별 구성내역
	1.1.2.1.3 M1 상품별 구성내역
	1.1.3.1.3 M2 상품별 구성내역
통화 및 유동성 지표(말잔, 계절조정계열,)	1.1.3.2.3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1.1.4.1.3 Lf 상품별 구성내역
	1.1.5.1 L 상품별 구성내역
	1.1.2.1.2 M1 상품별 구성내역
통화 및 유동성 지표(평잔, 원계열)	1.1.3.1.2 M2 상품별 구성내역
중와 못 ㅠㅎㅎ 시표(당한, 편계절)	1.1.3.2.2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1.1.4.1.2 Lf 상품별 구성내역
	1.1.2.1.4 M1 상품별 구성내역
	1.1.3.1.4 M2 상품별 구성내역
통화 및 유동성 지표(말잔, 원계열)	1.1.3.2.4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1.1.4.1.4 Lf 상품별 구성내역
	1.1.5.2 L 상품별 구성내역

1-2 주요 통계표, 그래프

□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장기 추이

통화 및 유동성지표 증감율 추이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021						20	2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M1	15.6	14.3	11.6	11.3	9.5	8.7	7.8	5.3	2.5	-0.4	-3.5	-6.8	-9.0
M2	13.2	12.7	11.8	10.8	9.4	9.3	8.8	8.0	7.2	6.6	5.9	5.4	4.5
Lf	10.7	10.6	9.9	9.1	8.0	8.1	7.7	7.0	6.5	6.0	5.6	5.0	4.4
L	10.5	10.0	9.5	8.5	7.4	8.6	7.5	7.1	6.8	6.7	6.0	5.7	4.4

주 : 1) M1, M2 및 Lf는 평잔 기준, L은 말잔 기준

1-3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해석방법

- 전월과의 비교는 통화지표의 각 금융상품별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 후 지표를 이용
-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원계열 지표를 이용

□ 이용시 유의사항

< 통계 이용 안내 >

1.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구성 금융상품

	통화	·지표	유동성	성지표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Lf(금융기관유동성)	L(광의유동성)
현금통화	•	•	•	•
요구불예금	•	•	•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	•	•
MMF		•	•	•
2년미만 정기예적금		•	•	•
수익증권		•	•	•
시장형상품 ¹⁾		•	•	•
2년미만 금융채		•	•	•
2년미만 금전신탁		•	•	•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²⁾		•	•	•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	•
생명보험계약 준비금 등 ³⁾			•	•
기타금융기관 상품 ⁴⁾				•
국채, 지방채				•
회사채, CP ⁵⁾				•

주 : 1) CD, RP, 표지어음

- 2) CMA, 2년미만 외화예수금,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3) 중권금융 예수금 포함
- 4)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 준비금, 증권사 RP, 예금보험공사채, 여신전문기관 발행채 등
- 5) 전자단기사채 포함
- 2. 2013년 9월부터 새로이 공표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통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한편,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통화성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별 통화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광의통화(M2)의 경제주체별 구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금융기관	기타부문
· 일반가계 · 소규모 개인사업자 ·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 공기업 · 민간기업 · 산업단체 등	· 보험회사, 연금기금 · 증권회사 · 여신전문기관 · 기타금융보조기관 등	· 사회보장기구 · 지방정부

3.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편제는 가계, 기업 등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B/S에서 예금을 비롯한 수신관련 계정과목을 예금주체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1-4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통계공표시 연도별 시계열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보도자료에도 포함하고 있음

2.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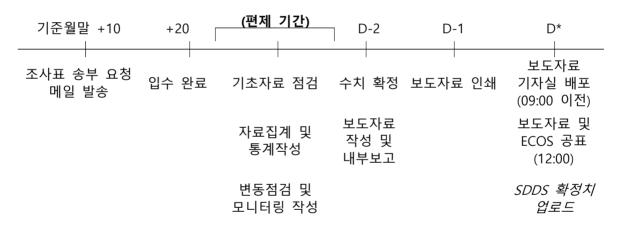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시점

- 통화 및 유동성 통계는 보고대상 기관은 보고대상기간의 익월 20일까지 보고하고 한국은행은 익익월 10일 전후 공표
 - 예시: 보고대상 기간이 2022년 12월인 경우 각 금융기관 등은 2023년 1월 20일까지 보고하고, 잠정치는 2월 14일, 확정치는 3월 15일에 공표
- 각 금융기관은 해당월 마감 후 결산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조사표 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며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시스템이 열악하여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2-2 통계작성과정별 소요되는 기간

- 조사 실시 : 매월 20일까지 통화금융통계조사표 회수
- 기초자료 오류 점검 : 자료의 이상치, 오류 등 점검(기초자료 입수 후 ~ 1주일 정도)
- 자료 집계 및 통계편제 : 자료집계·통계편제작업 수행 및 변동 점검 등 모니터링(~통계공표 2일전)
- 보도자료 작성, 내부보고 및 공표 : 매월 10일 전후
- ※ 계절조정지수의 산출 : 전년도 말까지 연장된 시계열을 기준으로 매년 1월 통계 작성시 계절조정을 새로 실시

통화금융통계(통화 및 유동성) 편제 일정



* 동 공표일정은 매년 말 정하여 "ECOS > 통계공표일정"에 발표하고 있음

2-3 통계 작성기준 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 차이

- 통화 및 유동성 : 보고대상기간(월)의 익익월 14일경 공표
-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보고대상기간(월)의 익월말 공표
- 가계신용 : 해당분기종료후 60일이내 공표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 익익월 14일경 공표
-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 해당분기 종료후 70일이내 공표
- 지역별여수신 : 익익월 20일경 공표

3. 공표일정

3-1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공표일정을 공개

(경제통계국 통계 공표 일정1)2) 보도자료 발췌)

명 칭	공표 주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화금융통계													
통화 및 유동성 ³⁾	월	1.17(호) 12:00 [2022.11]	214(호) 1200 [2022.12]	3.15(介) 12:00 [2023.1]	4.14(금) 12:00 [2023.2]	5.12(音) 12:00 [2023.3]	6.14(介) 1200 [2023.4]	7.14(금) 12:00 [2023.5]	8.11(音) 12:00 [2023.6]	9.13(介) 12:00 [2023.7]	10.17(호) 12:00 [2023.8]	11.14(호) 12:00 [2023.9]	1213(分 1200 [2023.10]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월	1.27(音) 12:00 [2022.12]	2.28(호) 12:00 [2023.1]	3.31(音) 12:00 [2023.2]	4.28(音) 12:00 [2023.3]	5.30(호) 12:00 [2023.4]	6.30(音) 1200 [2023.5]	7.28(금) 12:00 [2023.6]	8.30(介) 12:00 [2023.7]	9.27(介) 12:00 [2023.8]	10.27(音) 12:00 [2023.9]	11.28(호) 1200 [2023.10]	1227(^) 1200 [2023.11]
가계신용	분기		221(호) 1200 [20224/4]			523(호) 1200 [2023.1/4]			8.22(호) 1200 [2023.2/4]			11.21(호) 1200 [2023.3/4]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분기			38 (令) 1200 [20224/4]			69(금) 1200 [2023.1/4]			9.7(목) 1200 [2023.2/4]			126(令) 1200 [2023.3/4]

주: 1) 동 통계 공표 일정은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내는 통계 작성 대상기간

3-2 통계공표 일정 예고(작성기관 홈페이지 등)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공표일정)
-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23년 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

3-3 예고된 통계의 공표일정 준수

- □ 통화금융통계는 공표 일정을 준수하고 있음
 - 매년 말 익년 통계공표일시를 보도자료 배포 후 ECOS 시스템에 등록하고, 임시공휴일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통화 및 유동성,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공표시기 통계의 경우, 사전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가 일치함

통계 종류	작성대상 기간	사전 공개된 공표일정	실제 공표시기	비고
통화 및 유동성	2022.12월	2023.2.14	2023.2.14	일 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2.12월	2023.1.27	2023.1.27	일 치

³⁾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는 보도자료 없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 (공표일: 2, 5, 8, 11월은「가계신용」통계 공표일, 기타 월은「통화 및 유동성」통계 공표일)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4-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통화금융통계는 IMF의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매월 통계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됨

4-2 분류체계 동일 여부

○ 통화금융통계는 IMF의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매월 통계의 분류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4-3 통계작성 기준시점 동일 여부

○ 통화금융통계는 매월 통계의 작성 기준시점이 동일하게 적용됨

4-4 보고 시기 동일 여부

○ 통화금융통계는 매월 금융기관의 보고시기가 동일함

5. 시계열 비교성

5-1 시계열 단절 발생 원인과 변경된 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

○ 통화금융통계는 시계열 단절이 존재하지 않음

6. 국가 간 비교성

6-1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 명칭 및 개요

□ 주요국의 통화금융통계

국가-통화	통화 발행자	통화 보유자	금융 상품
IMF 매뉴얼 상 '광의통화 '	중앙은행 및 기타예금취급기관 (DTC 및 MMFs)	기타금융기관, 주 및 지방 정부, 공공 비금융기업, 기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기관	예금취급기관 외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 통화 통화보유자가 소유한 국내 및 외화로 양도 가능한 기타예금; 통화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MMF, 통화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금융기관이 발행한 단기채무증권
미국 -M2	모든 예금취급기관, 연준, 상업 은행, 저축 기관, 신용 조합 및 MMF	화폐 발행자와 연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보유분 제외 (통화 포함)	자국 통화만 포함. 미국 재무부, 연준 및 예금취급기관 외부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 비은행 발행 여행자수표, DTCs의 개인퇴직연금(IRA) 및 Keogh퇴직연금 잔액 미만의 저축 및 정기예금(10만 달러 미만), MMF의의 IRA 및 Keogh 퇴직연금 잔액 미만의 MMF. RP와 채무증권은 만기와 상관없이 제외
영국-M4; M4 ^{ex}	은행 기관	통화 발행자가 아닌 민간거주자. 2009년 7월부터 광의통회에 CCP, 유동화전문회사 등 금융중개기관 (M4 ^{ex}) 제외	영란은행 및 은행기관 외에서 유통되는 자국 통화(지폐, 동전)만 해당. 비은행 민간부문 예금(RP포함); 예금증서, 만기 5년 이내 채무증권 포함. 비거주자 보유분 제외.

국가-통화	통화 발행자	통화 보유자	금융 상품
일본–M3	일본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은행 기관, 우체국, 일본 내 외국은행 지점, 농협, 수협, 신협 등)	비금융기업, 개인 및 지자체를 포함한 지방 정부(중앙정부, 중앙은행, 예금기관, 보험회사, 지주 회사, 정부계열금융기관, 증권회사 및 단기금융기관, 비거주자 제외)	지폐와 동전,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및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하고 통화보유자가 소유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로지역-M3	MFI (유로지역에 위치한 유로시스템 및 ODC)와 중앙정부 (일부 유로 지역 국가의 우편 계좌 예금 계좌 및 재무부 예금취급 시설).	중앙정부를 제외한 유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비 MFI. 주 및 지방 정부 및 사회 보장 기금이 포함	자국통화 및 외화. 유통통화 및 1일물예금, 만기 2년 이하 예금, 통지후 3개월 안에 찾을 수 있는 예금, CCP와의 환매 조건을 제외하는 환매조건부채권, MMF 및 머니마켓증권, 최대 2년의 채무 증권

자료: IMF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pre-publication draft, 2016

6-2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와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상황을 감안하여 통화 및 유동성을 정의할 수 있어 각 국 통화량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움

6-3 통계자료를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제공 항목 등

- □ 국제기구 등 자료제공 목록
 - IMF에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책자수록 원고" 제공
 - 통화 관련 항목(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등)
 -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세부항목 포함)
 - 중앙은행 개관표
 - 금리

7.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7-1 작성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통계와 금융위·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치는 가계의 금융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통계라는 점에서 유사함
 -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는 가계신용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공식통계로 1998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전 기관이 가계에 제공하는 가계대출(사업용대출은 제외)과 판매신용이 대상
 - 금융위·금감원 속보치는 가계대출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통계청 승인 없이 한시적으로 작성·공표되는 통계자료로 2017년 4월부터 작성되었으며 감독대상 금융기관(단, 비감독대상중 새마을금고 포함)의 가계대출이 대상(판매신용 제외)

7-2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및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통계와 금융위·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치는 양 통계간 작성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포괄 대상기관 및 대상상품이 다름

가계신용통계와 가계대출 속보치의 비교

	가계신용통계 (한국은행)	가계대출 속보치 (금융위·금감원)
작성목적	가계신용 규모의 종합적·체계적 파악	가계대출 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적기 정책대응
작성주기 (공표시작시점)	분기별 [*] (1998.9월)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월별	월별 (2017.4월)
	은행, 상호금융, 신협,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 새마을금고	(좌동)
대상기관	(+) 신탁, 우체국예금 보험, 연금기금, 증권사, 자산유동화화사, 대부사업자, 한국장학재단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대상상품	가계대출 + 판매신용	가계대출

8.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8-1 두 수치가 차이가 나는 요인 및 이용 시 고려사항

	ဂ္ဂ ဝု
ᅵ차시	- S O

○ 차이 발생요인은 주로 금융기관의 조사표 작성 시 분류 오류로 발생

□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가 거의 없음

○ 광의통화(M2)의 경우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해당월 조사표 보고시 전월 수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이며 전체 통계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8-2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

- 광의통화(M2)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확정 보도자료 시 수정
- 해당월 통계 보도자료에는 잠정자료를 발표하고 전월 자료를 확정하는 형식

(평잔, 조원)

구분	잠정	확정	차이	수정여부
2022.2월	3,664.8	3,662.6	2.2	수정

8-3 공표 후 오류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 사유, 조치과정, 결과 등 기록 · 관리

○ 「2017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3.9일 보도자료)의 '<참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상호저축은행의 1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9,775억원)이 실제에 비해 과대 계상되어 발표되었음

- 동 오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2016.12월까지는 가계대출에서 제외하였던 일부 영리성대출을 2017.1월에 가계대출로 재분류하여 보고함에 따라 발생
- 한국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가계대출 통계자료를 재점검한 후, 2017.1월분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를 정정하였음(3.24일)

2017.1월분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 수정내용

(억원)

		(1 = /
	수정 전	수정 후
1월중 증가액	+9,775	+4,607
1월말 잔액	192,624	187,456

- 가계신용통계 기초자료의 추가 확보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의 과거 시계열(2007.4/4분기~2015.3/4분기 기간 대상)을 수정하였음(2019.11.21일)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항목인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수치를 수정

9.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9-1 통계공표 방법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KOSIS 등을 통하여 통계정보를 통계이용자에게 제공

9-2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여부

	한국은행 홈페이지	ECOS	KOSIS
보도자료	0	0	X
통계 시계열 자료	X	0	0

9-3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

□ 통계 활용 실태

○ 보도자료 조회수(2023.2.24일 기준)

보도자료명	조회수	보도자료명	조회수
2022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3790	2022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6028
2022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2645	2022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5262
2022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4397	2022년 9월중 통화 및 유동성	3649
2022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91	2022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2820
2022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2581	2022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3765
2022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3990	2022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5271

○ ECOS 이용자수(2022년중 월별 이용자수) - "통화/유동성" 통계의 외부 이용자수

대상월	ECOS 이용자수 ¹⁾
2022.1월	17,135
2022.2월	14,735
2022.3월	17,728
2022.4월	11,289
2022.5월	19,443
2022.6월	23,185
2022.7월	22,670
2022.8월	24,195
2022.9월	37,793
2022.10월	46,626
2022.11월	50,005
2022.12월	42,150

주 : 1) 2022.1~5월은 구ECOS 기준, 6~12월은 신ECOS 기준

10. 통계설명자료 제공

10-1 통계설명자료에 대한 소재 정보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보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메타DB
- 간행물(홈페이지,ECOS) :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DB(http://meta.narastat.kr) : 통계설명자료

10-2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 통계 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 02-759-5348)

<보고목적 및 활용>

- 보고목적 :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각종 통화금융통계를 편제하여 통화신용정책 및 여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활용)분야 · 실태 금융

<작성유형>

- 작성유형 : 보고통계

<조사대상>

- 보고대상 범위 : 금융기관 - 보고대상 지역 : 전국

- 보고단위 및 보고대상 규모 : 기업체

- 적용분류 : (주) 산업/대분류

<보고항목>

- 보고항목 : 통화(M1, M2) 및 유동성(Lf, L), 금융기관 여수신, 지역금융통계,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가계신용, 산업별대출금 등

<공표>

- 공표주기 : 월

- 공표시기 : 작성기준 월 익익월, 작성기준분기 익익월(가계신용, 산업별대출금)

- 공표범위 : 전국

-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http://www.bok.or.kr, http://ecos.bok.or.kr

<보고기간>

-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 매월(매분기)

- 보고기간 : 조사기준월 익월 20일~말일(조사기준분기 익월 20일~말일)

- 조사주기 : 월

- 계속여부 :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공표되는 통계의 세부적인 포괄범위는 각 기관의 통계편제 목적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과 다를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 협의통화(M1)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광의통화(M2) M2 = M1 + 만기2년미만 정기예적금 + 시장형상품 + 만기2년미만 실적배당형상품 + 만기2년미만 금융채 + 기타(CMA, 신탁형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2년미만 거주자 외화예금)
- 금융기관유동성(Lf) Lf = M2 + M2포함 금융상품중 만기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보험 포함)의 보험계약준비금 등
- 광의유동성(L) L = Lf + 정부 및 기업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증권회사 대고객 RP, 여신전문기관의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 가계신용 = 금융기관(공적금융 포함)이 일반가계에 제공한 전체 신용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괄
- 가계대출 = 금융기관(공적금융 포함)이 가계에 공여한 대출
- 판매신용 =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괄
-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금융기관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 금융기관이 해당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자료보고방법>

- 자료보고방법 : 행정집계

<법적근거>

-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86조

<보고연혁>

- 보고연혁 : 최초작성년도 : 1951

(주요연혁)

- 1951.3 : 통화량을 통화공급량 제1의와 통화공급량 제2의로 규정하여 최초 편제·발표
- 1957.4 : 최초 통화신용정책의 규제지표로 통화(M1)을 채택
- 1958.9 : 통화서베이표 방식의 통화금융통계를 금융개관표라는 명식으로 최초 공표
- 1969.7 : 본원통화 공식 편제 및 발표
- 1970.1 : 평잔기준의 통화지표(국내신용, 통화, 총통화) 편제
- 1970.4 : 국내신용 공식 발표
- 1979.3 : 총통화(M2) 공식 편제, 발표
- 1982.10 : M3를 1982.9월분부터 작성하여 공표
- 1996.7 :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지표를 최초 작성하여 공표
- 1998.5 : 가계신용통계(가계대출+판매신용) 신규 편제
- 2002.3 :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2000)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화지표로서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를 작성하여 공표
- 2006.4: 광의유동성(L) 지표를 1995.1월분부터 작성하여 공표, 기존의 M3를 금융기관유동성(Lf)로 명칭 변경
- 2012.3 : 통화 및 유동성 증감률의 주지표를 기존의 원계열 전년동기비에서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로 전환
- 2013.9 : 경제주체별 광의통화(M2)를 신규 작성하여 공표

<보고체계>

- 보고체계 :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 → 한국은행 (금융기관 보고서 오류 검증 및 집계 → 상호처리 및 대조계정 제거 → 각종 통화지표 및 금융통계 편제)

<승인내역>

- 승인번호 :301006 - 승인일자 :1976-07-22 - 통계종류 : 지정통계

10-3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 참고자료

<비밀보호>

-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개별 금융기관의 미공개 자료가 노출될 수 있어 제공하지 않음

관련근거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 집계표 데이터 : 통화지표별로 집계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음
-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 제출(IMF, BIS 등)
- <기타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한국은행, 2008)
-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한국은행, 2019)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IMF, 2016)

10-4 간행물 또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설명자료 제공(KOSIS 통계설명자료 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메타DB
- 간행물(홈페이지,ECOS) :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보도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DB(http://meta.narastat.kr) : 통계설명자료

11.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11-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

□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12. 자료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12-1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 비밀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규정)
 - 일반적으로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및 보안은 한국은행법 및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 한국은행법 제42조 및 제 104조 등에 따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제42조 및 제 104조>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4조(벌칙) :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한편 통계편제시스템(ECOS)의 접근 권한을 직원별로 제한적으로 부여하여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12-3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 한국은행법 제42조 및 제 104조 등에 따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제42조 및 제 104조>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4조(벌칙) :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한편 통계편제시스템(ECOS)의 접근 권한을 직원별로 제한적으로 부여하여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13.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13-1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금융기관(보고대상기관)의 보고자료를 통화지표(조사항목)별로 집계한 통계가 공표되므로 응답자(보고기관) 식별 가능성은 없음

13-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14.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14-1 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보안 관련 지침이나 조치

- □ 자료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ECOS 통계편제시스템의 ID를 직원별로 제한적으로 부여
- □ 자료 보안에 관한 법령(규정)은 한국은행법 및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한국은행법 제42조 및 제 104조>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4조(벌칙) :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1-1 통계기획 및 분석 인력

-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 금융통계팀
 - 담당인력 : 경제, 경영, 통계 등 전공 직원

1-2 통계 관련 교육과정 이수 내역

- □ 통계관련 교육과정 이수
 - 한국은행 및 외부기관 주최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통화금융통계 편제에 필요한 통계프로그램 활용 능력 습득, 금융상품 및 자산시장 분석, 거시경제 지표 분석 능력 등 통계편제의 전문성 및 분석역량을 제고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2-1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실적
- □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 IMF 통화금융통계 작성 매뉴얼 및 편제가이드
 - O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통화금융통계 매뉴얼, 2000)
 - O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Compilation Guide(통화금융통계 편제가이드, 2008)
 -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통화금융통계 매뉴얼 및 편제가이드(2018)

(https://www.imf.org/en/~/media/87F002A9CC784DF786797A6526A98D54.ashx)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 주요국의 통화금융통계 비교
 - 대만 (http://www.cbc.gov.tw/ct.asp?xItem=30010&CtNode=517&mp=2)
 - 미국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6/current/default.htm)
 - 싱가포르 (https://secure.mas.gov.sg/msb-xml/Report.aspx?tableSetID=I&tableID=I.1)
 - 영국

(http://www.bankofengland.co.uk/boeapps/iadb/index.asp?Travel=NIxSTxTAx&levels = 1&XNotes=Y&C=61C&XNotes2=Y&Nodes=X55885X68034X68035X68036X68144X68147&SectionRequired=A&HideNums=-1&ExtraInfo=false&G0Xtop.x=33&G0Xtop.y=12)

- 유로 (http://sdw.ecb.europa.eu/home.do)
- 일본 (http://www.stat-search.boj.or.jp/index_en.html)
- 중국 (http://www.pbc.gov.cn/diaochatongjisi/116219/116319/3471721/3471760/index.html)
- 호주 (http://www.rba.gov.au/statistics/frequency/financial-aggregates.html)

3. 기타 문헌

- □ 통계 수록 보고서
 -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계부채 상황 관련 내용 등)
 (http://www.bok.or.kr/portal/bbs/B0000156/list.do?menuNo=200067)
 - 금융안정보고서(가계신용, 기업신용 등)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3/list.do?menuNo=200769)
 -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한국은행 조사국 박경훈, 심연정)
 (http://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234229&menuNo=200433)